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11
----------	-------

발의연월일 : 2026. 2. 20.

발 의 자 : 조은희 · 조승환 · 이종욱
이만희 · 주호영 · 이성권
김용태 · 이인선 · 서명옥
신성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
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보조금 등) ① ----- ----- ----- ----- ----- ----- ----- ----- ----- <u>.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